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단832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준, 정▼주, 김▲송, 권◆진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유■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규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998,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65,736,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73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발생

가) 원고는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원이 연루된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순번	일시	이체한 계좌	예금주	이체금액
1	2018. 11. 21.	F은행 G	피고 B	5,000만 원
2	2018. 11. 22.	H은행 I	피고 C	3,000만 원
3	2018. 11. 23.	기업은행 J	피고 D	9,000만 원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들의 각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반환받게 되었다.

순번	은행계좌 관련	반환된 금원(원)	반환되지 않은 금원(원)
1	피고 B	3,409	49,996,591
2	피고 C	0	30,000,000
3	피고 D	24,263,197	65,736,803

2)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가) 피고 B는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불법 해외 카지노 베팅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8. 11. 20. 21:00경 홍콩에 있는 'K'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베팅 금액을 입금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B 명의의 F은행(G) 계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 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가 2018. 11. 21. 피고 B 명의의 F 은행계좌(G)로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6. 3. 피고 B에 대하여 위 가).항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5.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68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6.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2. 14. 확정되었다.

3) 피고 C에 대한 수사결과

가) 피고 C은 생활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9. 11. 21.경 개인대부업체 N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송금하여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대출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라고 믿고 H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직후 H은행 응암동 지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C 등을 상대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C은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신용을 올려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 방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볼 때, 피고 C이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피해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3) 원고는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피고 C에 대한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후 위 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으로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피고 B, C이 대출 내지 불법적인 수익으로 손쉽게 금전을 확보하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이를 용이 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 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 5, 373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대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대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을 뿐인 점, ② 이와 달리 피고 B가 위 이체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위 돈에 관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만연히 건네주었고, 이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접근매체를 스스로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바, 피고 B로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접근매체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 B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와 피고 B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손해액(49,996,591원)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4,998,295원(= 49,996,591원 X 5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 2018. 11. 2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 C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③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C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고소한 사기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⑤ 피고 C의 행위가 피해자인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가담하였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8. 11. 21.부터 2018. 11. 23.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특히 피고 D은 2018. 11. 23.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인출하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고,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P 주식회사에 계좌이체하여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이를 사실상 모두 처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3) 또한 피고 D은 수수료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자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사기 행위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청구취지 판결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직권에 의한 책임제한

피고 D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지만, 피고 D과 관련되어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65,736,803원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직권으로 피고 D의 위 책임범위를 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65,736,803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2018. 11. 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그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